#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6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정희용·김선교·박덕흠

송언석 · 임이자 · 구자근

조승환 · 김소희 · 신성범

주호영 · 윤영석 · 백종헌

고동진 의원(13인)

#### 제안이유

일상·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정비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 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정의들을 삭제함(안 제2조).
- 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 조).
- 라.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함.
- 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 바. 제4장의 제목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변경함.
- 사.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28조부터 제35조 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 아.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장 삭제).
- 자.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7 조 삭제).
- 차.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 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 해충, 산불과 관 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9조제1항).
- 타.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 파.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3조 및 제54 조).

하.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보호수, 산림병해충"을 "보호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20조 · 제21조 · 제21조의2 ·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산불의 방지 및 복구"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한다.

제4장제1절(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 앞의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절(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

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또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같은 조 제4항·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	제1조(목적)
역을 <u>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u>	<u>관리</u>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	
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u>예방·복구</u> 하는 등 산림을 건	
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	
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	<u>&lt;삭 제&gt;</u>
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	
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	
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농작물은</u>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	<u>&lt;삭 제&gt;</u>
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	
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	
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	

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방제기관"이란 산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6의2. ~ 6의5. (생략)

-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 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 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 을 말한다.
-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 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 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 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 <삭 제>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삭 제>

<삭 제>

6의2. ~ 6의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 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 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 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 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 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u>「급경사지 재해</u>예방에 관한 법률 시2조제1호의 급경사 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삭 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 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

<삭 제>

<삭 제>

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u>일</u>련 의 체계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
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 <u>진방향</u>
-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인력 등의 확충에관한 사항
-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적용범위)	
<u>보호수</u>	
,	
제3장 수목진호	교 등
<삭 제>	

- 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교 육·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 복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 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① 산림청장은 매 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 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야 한다. 전국연도별계획을 변 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 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 ③ 전국연도별계획과 지역연도 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 <삭 제>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 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 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 하여 조사 · 연구하고, 방제기술 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 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 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 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 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 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 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 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 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 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 · 방제대책본부의 구 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삭 제〉 예찰 · 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 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 ·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 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산림소유 | <삭 제> 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 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는 예찰 · 방제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 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

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 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 에 따라야 한다.

-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 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 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 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있다.
- ⑥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 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 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 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 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 <u>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u> <u>요한 사항</u>
-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 ①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u><삭</u> 제>

- <u>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u> <u>사</u>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 니어링사업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 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 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 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 여야 한다.
-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의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 사이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 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 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 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 · 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그 특별 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예찰·방 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u>삭 제>

-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 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한다.
  -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

     표 및 추진 방향
  - 2. 산불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제4장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삭 제>

 <삭 제>

-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 7. 산불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 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 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 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 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 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 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 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 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 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 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 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 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

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 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 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 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 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 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 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 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 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 <삭 제>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

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 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 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38조제1항 본 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 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 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 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 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 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삭 제>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 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 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 인 예방 · 진화체계를 마련하여 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 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

<u>야 한다.</u>

-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 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 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 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 구를 날리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구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

<u>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u>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 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 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 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 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 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 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 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 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 식을 기르고 지식을 언도록 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

- 을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 야 한다.
-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
   간 등
-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 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 불전문예방진화대원
-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

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 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 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 | <삭 제> 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 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 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 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 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 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 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 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 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

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 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 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 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 ·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 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

<u><</u>삭 제>

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 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 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 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 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 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 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 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

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 회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u>1. 소방관서</u>
- 2. 경찰관서
- 3. 군부대
-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 6. 기상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 회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 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 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 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 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 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 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 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 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제4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

<u><삭</u>\_제>

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 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 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산불의 진화
-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 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 · 통솔
-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 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 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 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 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 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 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 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 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u><삭 제></u> <삭 제>

<삭 제>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 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45조(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u>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u> 복구

<u>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u> <u>등</u>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체 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u><삭 제></u>

<삭 제>

<삭 제>

<u><</u>삭 제>

## 목표 및 추진 방향

-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인

   력・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 청에 관한 사항
-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 리 등에 관한 사항
-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 에 관한 사항
-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복원 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 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 우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

<u>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u> <u>또한 같다.</u>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 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 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 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 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 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 림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 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 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 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 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 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 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 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삭 제</u>>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 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 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 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 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 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 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 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사 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 <삭 제>

대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 할 수 있도록 산사대정보체계 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 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 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등)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산림정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

사태위기경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 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 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 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 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삭 제〉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 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 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 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

<u>사의 내용·방법이</u>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 <삭 제> 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 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 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 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 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 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 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 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알려야 한다.

- 1. 지정사유
-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 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 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 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 한 같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 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 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8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 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 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 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 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①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 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으로 산사대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 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 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 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 손하는 행위
-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 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 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 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삭 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 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 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삭 제> 산지 매수·교환) ① 지역산사 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 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 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 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 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 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 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 ·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 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
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
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
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립・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
   간 등
-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 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 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산
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
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또
는 산사태유관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삭 제>

<u><삭 제></u>

-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유관기 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 태예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산사태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현장 상 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 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 을 하여야 한다.
-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 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 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 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 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 성 ·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 <삭 제>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 <삭 제> 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 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 ・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 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

대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그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 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 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 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 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 대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u><삭 제></u>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 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 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 저 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략)
-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삭 제>

<삭 제>

세48조(포상)
<u>.</u>
. (-1-9 1 1 4)

1. (현행과 같음) <삭 제> 징후를 신고한 자

-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 ·검거<u>에 공로가 있는 사람</u> 이나 기관 • 단체
-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 <삭 제> 신고한 자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저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예 찰·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 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 • 방제, 산불방지 또는 산 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 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산림의 건강 • 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 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 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 림청장은 산불의 예방 · 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삭 제>

H49조(	(다른	사	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	<u>산림</u>	청장은	<u>-</u>
					<u>산</u>
<u>림</u>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① (생 략)

-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u><삭 제></u>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 <삭 제>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 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 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	⑥ <u>제1항</u>
수범은 처벌한다.	
제54조(벌칙) ① (생 략)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	<u>&lt;삭 제&gt;</u>
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삭 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 </u>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조제3항제1호·제3호·	<삭 제>
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u> </u>	<삭 제>
계하거나 감리한 자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소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5. (생략)
-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 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 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사용 함복 사실품부명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동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u><삭 제></u>

3 -----

1. ~ 1의5. (현행과 같음) <<u>삭</u> 제>

<삭 제>

- 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 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 니하고 불을 놓은 자
-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